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('26.6.24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권대영)는 6월 24일 제12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아센디오,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(주) 및 명가유업(주)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 또한,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(태울회계법인, 대주회계법인, 정명회계법인)과 감사반(소농공인회계사감사반,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)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*하였습니다.

* 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(주)와 명가유업(주)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의 조치 의결결과를 원안대로 접수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윤 (02-3145-7311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조점호 (02-3149-0353)
		담당자	팀 장	송하식 (02-3149-0365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박인숙 (02-3149-0363)
		담당자	팀 장	윤정원 (02-3149-0381)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6.6.24. 의결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아센디오 결산기 : 2019.12.31.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: 영화, 비디오물,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	【회사】 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(별도 '19년 29,488백만원) -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하여,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	회 사 :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재무담당임원)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아센디오의 감사인 태울회계법인('19년)</p>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(별도 29,488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태울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 - (주)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의왕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(주)</p> <p>결산기 : 2019.12.31. 2020.12.31. 2021.12.31. 2022.12.31. 2023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(용지) 및 부채(미지급비용·총당부채) 과소계상 (’19년 95,988백만원, ’20년 131,505백만원, ’21년 180,340백만원, ’22년 97,147백만원, ’23년 107,17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총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</p> <p>②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(용지) 과대계상 (’19년과 ’20년 18,114백만원, ’21년 16,583백만원, ’22년 12,335백만원, ’23년 16,60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,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·중복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1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 투자(주)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('19~'23)</p>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재고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9년 95,988백만원, ’20년 131,505백만원, ’21년 180,340백만원, ’22년 97,147백만원, ’23년 107,172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에 대한 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9년과 ’20년 18,114백만원, ’21년 16,583백만원, ’22년 12,335백만원, ’23년 16,606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분양 완료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비와 추정사업비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대주회계법인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%</p> <p>-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 투자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</p> <p>공인회계사 : 2인</p> <p>-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 투자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</p> <p>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·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6시간</p> <p>공인회계사 : 3인</p> <p>-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 투자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</p> <p>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4시간</p>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p>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2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[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명가유업(주)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12.31. 2021.12.31. 2022.12.31. 2023.12.31. 2024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: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(’17년 7,499백만원, ’18년 15,164백만원, ’19년 18,543백만원, ’20년 18,276백만원, ’21년 21,732백만원, ’22년 17,096백만원, ’23년 5,144백만원, ’24년 8,08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과</p> <p>-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인식 후 이를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, 매출채권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(과소)계상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(대표이사)</p> <p>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담당임원)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)

[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관련]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명가유업(주)의 감사인 소상공인회계사감사반 (제97호)('17년~'19년)</p>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17년 7,499백만원, ’18년 15,164백만원, ’19년 18,543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소상공인회계사감사반 (제97호)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·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4시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4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명가유업(주)의 감사인 정명회계법인('20년)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20년 18,276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정명회계법인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</p> <p>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명가유업(주)의 감사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(제425호)('21년~'24년)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21년 21,732백만원, '22년 17,096백만원, '23년 5,144백만원, '24년 8,084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(제425호)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가유업(주)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)